

의안번호	2211801
의 퇴 인	이학영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A4106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2(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)	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(단서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7조의2(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2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현행법에 따르면, 신·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“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”, “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(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)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” 등으로 참여할 수 있음
 - 이러한 주민 참여에 대해 현재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¹⁾

1)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 제7조의2(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)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

- 다만, 개정안은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2025년 6월 기준으로 주민참여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총 2.1GW(누적)이며, 이 중 태양광이 1.6GW(누적), 풍력이 0.5GW(누적) 수준임

[표 1] 주민참여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

(단위: 개소, MW)

구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.6월
태양광	1개소	6개소	32개소	100개소	44개소	46개소	22개소	12개소
	(2MW)	(7MW)	(144MW)	(461MW)	(347MW)	(366MW)	(255MW)	(23MW)
풍력	—	—	1개소	1개소	—	5개소	4개소	2개소
	—	—	(43MW)	(28MW)	—	(129MW)	(153MW)	(116MW)
합계	1개소	6개소	33개소	101개소	44개소	51개소	26개소	14개소
	(2MW)	(7MW)	(187MW)	(489MW)	(347MW)	(495MW)	(408MW)	(139MW)

자료: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.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